

의안번호	2216417
의 퇴 인	서미화의원
회 답 일	2026.4.6.
추계번호	26D01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비상임위원 2명을 증원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국가인권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30억 6,600만원(연평균 26억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43	43	43	43	43	215	43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	8	25	42	8	125	25
국가인권연구원 설립	2,477	2,447	2,522	2,600	2,680	12,726	2,545
합계	2,562	2,498	2,590	2,685	2,731	13,066	2,6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인권위원을 기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증원(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의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 26조의3 (국가인권연구원)	인권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조사·권고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연구원을 둔(제1항) 국가인권연구원은 인권 침해의 구조적·제도적 원인에 대한 분석, 위원회의 권고, 의견 표명, 정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국내외 인권 정책 및 제도의 비교·분석,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새로운 인권 의제의 발굴 및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 연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행함(제2항) 국가인권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제3항) 그 밖에 국가인권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4	제27조의2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
2	안 제5조의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	-
3	안 제 26조의3 (국가인권연구원)	○	-
4	제27조의2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미대상: 기 구축된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은 2023년도 예산으로 구축 후 2024. 3.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 운영 중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 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지명하고, 국가인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상임위원 정수 확대 및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국가인권연구원 설립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비상임위원 정수 확대 및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회의참

석수당 추계

- 개정안은 인권위원을 기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임위원 2명을 증원
 - 국회 및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7명의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 7명)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7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7명 인권위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비를 추계함
 - 비상임위원 2명 증원 시 업무공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
- 국가인권연구원 설립 관련 인력충원 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5명, 7급 3명)으로 가정함
- 인건비 단가는 2026년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추정
 - 국가인권연구원 직원이 사용할 업무공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¹⁾
 - 국가인권연구원 사업비는 구체적 계획 미비로 추계에서 제외함
- 개정안 부칙은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교육원 신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유희공간이 있다고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비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안 제5조)

□ 비상임위원 2명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연간 전원위원회 24회, 소위원회 15회임
- 비상임위원의 회의 1회당 참석수당은 안전검토비 35만원 및 회의참석수당 20만원 등 55만원이며, 추계기간에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비상임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회의참석수당	43	43	43	43	43	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5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 13명, 임기 3년이라는 점,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함

-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 7명)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7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인권위원 7명에 증원되는 비상임 인권위원 2명을 포함하여 인원위원 9명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비를 추계함
- 추가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9명 인권위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추계기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횟수를 산정한 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개최횟수는 3회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안전검토비 20만원, 회의참석수당 20만원 등 총 4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27~2031년

(단위: 건, 명,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건수	5	1	3	5	1	15
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위원 수	7	7	7	7	7	-
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회의개최건수	3	3	3	3	3	-
회의참석수당 단가	0.4	0.4	0.4	0.4	0.4	-
추가재정소요	42	8	25	42	8	1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가인권연구원 설립(안 제 26조의3)

□ 국가인권연구원 설립 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국가인권연구원 설립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20명으로 가정함

- 충원인력의 구성은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5명, 7급 3명으로 가정함
- 인건비 단가는 국가인권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상승률 3.0%를 적용하여 추정

[표 4] 국가인권위원회 인건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	4급	5급	6급	7급
인건비 단가	151,730	122,260	97,046	75,123	59,88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²⁾을 적용하여 산출함
- 기본경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총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임차료 제외) 비율(11.6%)을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2027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11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6년 1월)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³⁾를 곱하여 산출함

2)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6. 1.)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0
기관부담률(%)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3) 2027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5,080,000원임

[표 5]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1,906	1,963	2,022	2,082	2,145	10,117
기관부담금	249	258	267	277	287	1,337
기본경비	220	227	234	241	248	1,170
자산취득비	102	0	0	0	0	102
합계	2,477	2,447	2,522	2,600	2,680	12,7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비상임위원 2명을 증원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국가인권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30억 6,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43	43	43	43	43	215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	8	25	42	8	125
국가인권연구원 설립	2,477	2,447	2,522	2,600	2,680	12,726
합계	2,562	2,498	2,590	2,685	2,731	13,0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국가인권연구원 인력규모를 20명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